

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

국가유산유형	지원대상	세부 지원내용	국고 보조율
[1] 국보 [2] 보물 [3] 사적 [4] 천연기념물 [5] 명승 [6] 국가민속 문화유산 [7] 국가등록 문화유산	① 국가유산 수장(보호)시설 건설 건립	가. 국가유산의 보호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축조 * 점(點)단위 국가유산, 면(面)단위 국가유산구역 내 중요한 유구(遺構, 옛 구조물의 흔적) 또는 천연기념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(대국민 공개 기능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) 나. 국가유산 수장시설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 *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자료, 출토된 주요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(국가유산의 공개를 위한 적정규모의 전시공간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)로서 구체적인 수장계획 및 기존 수장시설의 포화부족이 명확한 경우에만 지원	가. 국가지정유산 70% 국가등록문화유산 50% 나. 국가지정유산 50% 국가등록문화유산 50%
	② 국가유산 가치증진 시설 건립	가. 국가유산의 가치증진 등을 위한 건축물 건축 등 * 건축물의 건축은 국가유산구역,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(국보, 보물) 내로 한정 나.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과 관련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전시관 역사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리모델링	가. 국가지정유산 70% 국가등록문화유산 50% 나. 국가지정유산 30% 국가등록문화유산 30%
	③ 국가유산 유지관리시설 건설	가. 관리소·경비소의 건축 등 * 관리소·경비소는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상시 거주 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* 사업위치는 국가유산구역, 보호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	국가지정유산 70% 국가등록문화유산 50%
	④ 국가유산 관람편의시설 건설	가. 안내소의 건축 * 안내소는 관람객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나. 화장실·휴게시설의 건축 다. 주차장 건축물의 건축 등 ※ (공통) 사업위치는 국가유산구역, 보호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	국가지정유산 70% 국가등록문화유산 50%

※ 비 고

* “건축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.

* “리모델링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.